

#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관련 안내

## I. 개요

### □ 추진배경

-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('18.3.20. 공포)됨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 입법의 원활한 현장 안착과 조기 도입을 유도할 필요  
- 이에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확인서를 발급하여 우대 지원

### □ 적용대상

- '18.3.1. 이후, 개정 근로기준법상 아래의 기업규모별 법정시행일 이전에 주 최대 노동시간(연장·휴일근로 포함)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시행한 중소 사업장 (5~299인 민간 사업장)

시행일	적용 대상
'20. 1. 1.	▶ 50~300인 미만 사업장
'21. 7. 1.	▶ 5~50인 미만 사업장

## II. 신청방법

### □ (주체)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시행한 사업주

### □ (방법) 노동시간 조기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개월이 경과한 날\*부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「노동시간 단축 확인 신청서」(붙임1) 제출(우편, 팩스, 전자우편 등)

\* (예) 조기 단축 시행일이 '21.3.12.인 경우 '21.5.1.부터 신청 가능

- (신청기간) ① 50~299인 사업장은 '21.6.30.까지  
② 5~49인 사업장은 '21.12.31.까지 신청 가능

○ (구비서류) 요건에 해당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<b>&lt; 구비 서류 &gt;</b>	
①	사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 등)
②	노동시간 조기 단축 시행일 전 1개월간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근로자명부, 임금대장 등)
③	노동시간 조기 단축에 대한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얻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④	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규정한 단체협약·취업규칙 등 노·사간 협약서
⑤	조기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과 확인서 발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의 주52시간 초과 근로자 有無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(근로자명부, 근태기록 자료(출·퇴근부 등), 임금대장 등)
⑥	법정 시행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 시행일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주52시간 초과자가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

### Ⅲ. 확인서 발급 요건

○ (요건) 아래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

- ① '18.3월부터 법정 시행일 이전에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시행할 것
- ② 노동시간 조기 단축에 대해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
- ③ 노동시간 조기 단축을 반영한 노·사간 협약을 제·개정할 것
- ④ 전체 노동자를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했을 것(조기 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<초과자 有>과 확인서 발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<無>을 비교)

\* 아울러 법정 시행일 이후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 시행일 이후 주52시간 초과자가 없음을 확인

요건	추가 설명
① 조기단축 시행	▶ '18.3월부터, 기업 규모별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 이전까지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여 시행할 것
② 노동자 과반수 동의	▶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,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
③ 노·사간 협약	▶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규정한 단체협약·취업규칙 등 노동자들의 집단적 의사가 반영된 노·사간 협약서*를 제·개정할 것 * 단체협약, 취업규칙, 협정, 확인서 등 그 명칭 여하에 관계없이 사용자가 임금,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 동의(합의)를 얻어 서면으로 작성한 모든 협약을 말하며, 근로계약서 갱신 등 노동자의 개별적 동의만으로는 부족

요건	추가 설명
④ 실노동시간 주 52시간 이하	<p>▶ <u>전체 노동자를 주 52시간 이내로 단축했을 것 (조기 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&lt;초과자 有&gt;과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&lt;無&gt;을 비교</u></p> <p>* (예) 조기 단축 시행일이 '19.7.5, 확인서 발급 신청일이 '21.2.5인 경우 '19년 6월과 '21.1월을 비교하여 주52시간 초과자 有에서 無로 변화</p> <p>▶ <u>법정 시행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법정 시행일부터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달까지 주52시간 초과자가 없어야 할 것</u></p> <p>* 50~299인 사업장은 '20.1.1. 이후, 5~49인 사업장은 '21.7.1. 이후 주52시간 초과자가 없어야 함</p>

### III. 결과 통지

-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처리 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

\* 필요 시 14일 범위 내에서 처리기간 연장 가능

▶ 조기 단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	확인서 발급
▶ 조기 단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	처리결과 통지서 발급 (확인서 미발급)
▶ 허위신고 또는 구비서류 미비로 인한 보완요구에 불응하는 경우	반려 통지

- 확인서 효력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(다만, '20.12.31. 이전 발급된 확인서는 3년임)

- 확인서 발급 이후, 허위 신청 사실 등이 확인되거나 주52시간제 미이행 사실이 확인되면, 즉시 확인서 취소 및 반납 조치를 받을 수 있음

\* 실제 휴일로 운영하지 않거나, 휴일가산수당을 미지급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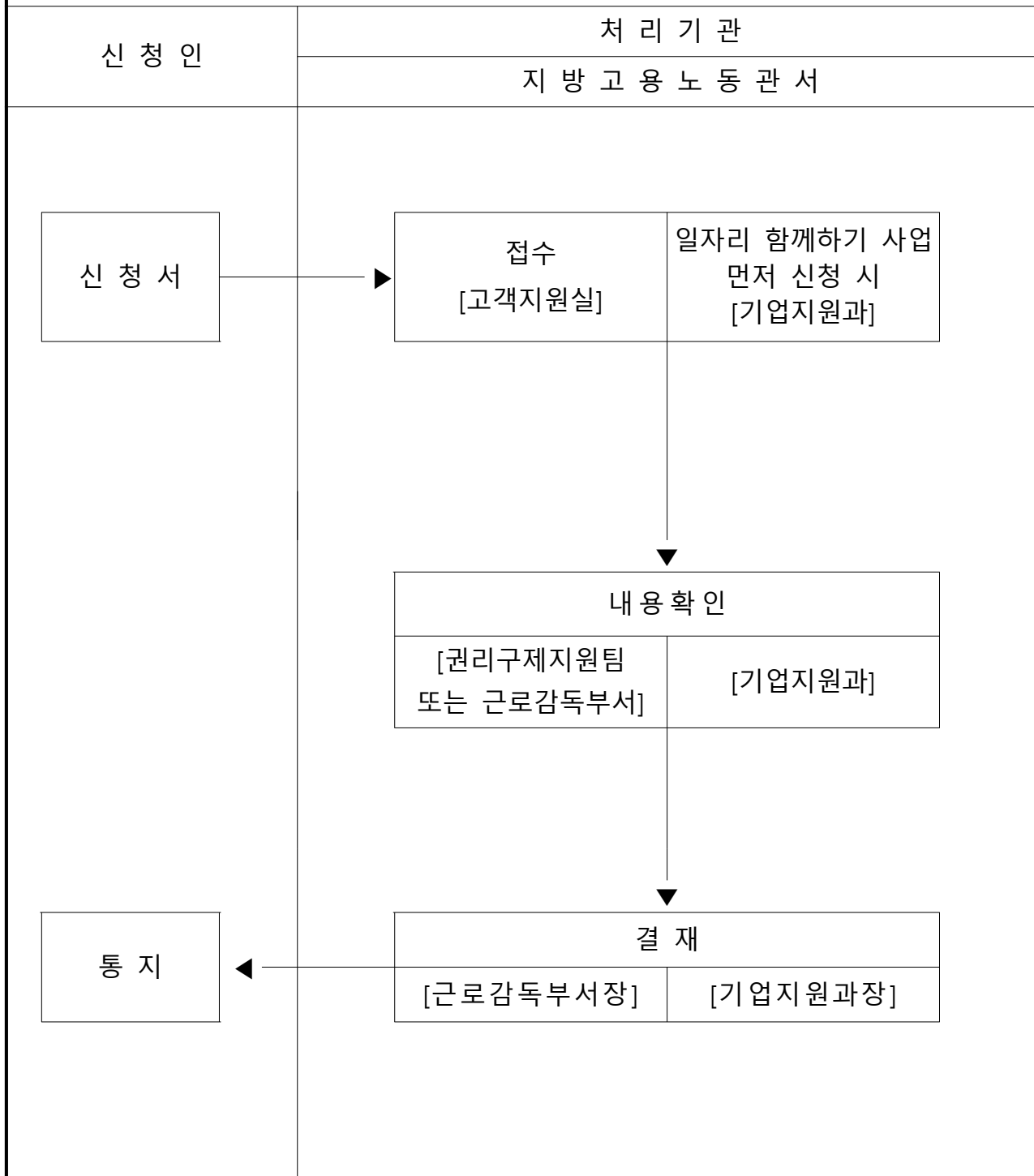
- 허위로 발급된 확인서를 통해 정부 지원제도의 혜택을 받은 경우 해당 제도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

※ 기재요령

- ⑤ 상시근로자 수: 일용·임시·상용근로자 중 어디에 속하든지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모두를 포함하여 조기단축시행일 이전 한달간 평균 근로자 수를 말합니다.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[붙임 2]

제 - - 호  <b>노동시간 단축 확인서</b>			
사업장명		업종	
사업자 등록번호		대표자명	
근로자수	명	전화번호	
소재지			
법정 시행일		조기단축 시행일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귀 사는 근로기준법(법률 제15513호, 2018.3.20.) 부칙 제1조 제2항에 따른 시행일인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보다 앞선 ○○○○년 ○○월 ○○일부터 노동시간 단축(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)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임을 확인합니다.                         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년       월       일                         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-top: 20px;"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○○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      (직인)                         </p>			
<p>※ 동 확인서 발급 이후, 허위 신청사실 등이 확인되거나 주 최대 52시간 미시행 사실이 확인되면, 확인서 발급 취소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</p> <p>※ 본 확인서의 효력은 발급일로부터 2년이며, 단, 우대사업별로 효력인정기간을 달리 명시한 경우 우대사업별 효력인정기간이 우선 적용됩니다. (또한 각 우대사업 소관부처의 사정에 따라 우대사업이 변경·폐지될 수 있으며, 해당 우대사업에서 별도로 자격 요건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.)</p>			

## 참고 1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발급 업무 프로세스 (일반)

단계	주체	내용
① 노동시간 조기단축 노동자 과반수 동의	사업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노동시간 조기단축에 대해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대표자의 동의</li> <li>▶ 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</li> </ul>
② 노·사간 협약 체결	사업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주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노·사간 협약(단체 협약·취업규칙 등) 제·개정</li> </ul>
③ 노동시간 단축 시행	사업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주 52시간 이하로 노동시간 조기 단축 시행 (주52시간제의 법정 시행일 전에 조기 단축 시행)</li> </ul>
④ 노동시간 단축 확인 신청	사업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노동시간 조기 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<u>다음달 1개월이 경과한</u> 날부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시간 조기 단축 시행 확인 신청*</li> </ul> <p>* ▲ 50~299인 사업장은 '21.6.30.까지 ▲ 5~49인 사업장은 '21.12.31.까지 신청 가능</p>
⑤ 노동시간 단축 확인 신청 검토	지방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① 해당 사업장의 법정시행일, ② 조기 단축 시행일, ③ 노동자 과반수 동의 여부, ④ 노동시간 단축을 입증할 수 있는 노·사간 협약서, ⑤ 조기 단축 시행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과 확인서 발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이전 1개월의 주52시간 초과자 有無 등 확인</li> </ul>
⑥ 노동시간 단축 확인 신청 처리결과 통지	지방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지방관서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(1회 연장 가능)에 처리결과를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통지</li> <li>▶ '확인서 발급 사업장 명단' 본부 보고(매일)</li> </ul>
⑦ 사후관리	지방관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실노동시간 단축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사업장 중 일부</li> <li>- 지원사업 소관 부처에서 통보한 조기 단축 의심 사업장</li> </ul> </li> <li>▶ 확인된 위반 사실을 각 부처와 공유하여 각종 지원제도의 부정수급(부당이득) 방지</li> </ul>

## 참고 2

###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내용

⇒ 아래 우대지원내용은 관계부처의 정책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- (공공조달 가점) 공공부문 및 자치단체 조달계약 낙찰자 결정 시 가점 부여<기재부·행안부>, 중소기업자간 경쟁 시 가점 부여<행안부 등>
- (자치단체 조달 계약) 0.3점~1점까지 부여
- (중소기업 조달 계약) 2점(1년 이상 단축시) 부여

문의처	044-205-3784 (행안부 회계제도과)
	042-481-4434 (중기부 판로정책과)
	042-724-7580 (조달청 건설용역과)

- (정책자금 우대) 국책은행 일자리 금융상품 금리 우대<금융위>
- 최대 1%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

#### < 현행 일자리 관련 자금의 지원 대상 >

기관명	지원 대상	금리인하
산 은	고용우수기업, 고용창출우수산업, 고용창출인증기업, 세제상 고용확대기업,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	△0.5%p
기 은	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,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	△0.3 ~ 1.0%p
수 은	과거 6개월 평균 고용자수 증가율이 2% 이상인 기업	△0.5 ~ 0.9%p
	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	△0.3%p

문의처	1588-1500 (산업은행)
	1588-2588 (기업은행)
	02-3779-6114 (수출입은행)

- (중소기업 정책자금 우대) 조기 단축 기업의 인건비 등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 지원<중기부>
- (지원대상)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기업(노동시간 조기 단축기업도 포함)
- (용자지원) 2억 원 이내, 금리: 3.0%(고정), 대출기간: 5년(거치 2년 포함)
- (지원절차) 상담·신청 → 현장실사 → 지원결정 → 대출약정 → 실행

문의처	1357 (중소벤처기업부)
	042-481-4382 (중소벤처기업부, 기업금융과)



- (산재보험료 할인) 법정 시행일까지 산재보험요율 10% 경감<고용부>
  - 50인 미만 제조업, 임업,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에 대해 재해 예방활동 인정 시 다음 연도 산재보험요율 10% 할인

문의처	1644-4544 (안전보건공단)
	044-202-7689(고용부, 산재예방정책과)

- (외국인력 가점) 외국인 근로자 신규 배정 시 가점 부여(2점)<고용부>
  -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에 점수제 가점 부여로 非단축 기업보다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제공 (법시행일 전까지만 가점 부여)

문의처	1350 (고용노동부)
	044-202-7153(고용부, 외국인력담당관실)

- (포상 등)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, 가족친화기업 인증 심사 시 가점<고용부, 여가부>
  - (으뜸기업) '노동시간 단축'을 현장조사 일자리 질 개선 항목에 포함 시켜 대상기업 선정시 우대
  - (가족친화기업) 가·감점 심사항목에 배점 부여(중소기업 2점, 대기업·공공기관 1점)

문의처	으뜸기업 선정 ⇒ 1350 (고용노동부) 044-202-7235(고용부, 일자리정책평가과)
	가족친화기업 인증 ⇒ 02-2100-6363(여가부, 가족문화과)